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 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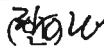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창성학원(대덕대학교)의 2022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1년 4월 8일

학교법인 창성학원

감사 : 김상민 


감사 : 홍인상 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: 창성학원 사무국장

성명 : 서치영 

직명 : 대덕대학교 행정처장

성명 : 한정철 

대덕대학(교) 감사지적(권고)사항

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

1. 각종 지급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노력
 - 근로장학금 지급지연으로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(교육부 이첩)으로 학교이미지에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
 - 급여 지급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(교직원 사기진작)
 -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있어 계약지급업무 절차 준수
2. 업무추진비 주말(토,일,공휴일) 사용 일부 건
 -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주말(토,일,공휴일) 사용 자제
 - 주말 사용시에는 근거 및 세부내역 증빙 구비